

여성노후빈곤과 국민연금제도확대실시에 관한 연구

- 노인가구의 연금소득수급액 결정요인분석 -

문 속 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여 윤 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대우전임강사)

임 혜 은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과정)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률의 감소로 인하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의 특성으로 인해 소득감소,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며 노인문제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최선화, 1999; 황선화, 2000). 앞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단계이며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가 여성노후빈곤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에 관련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보면 현행국민연금제도안에서 여성노인의 사회적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원칙을 여성노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므로써 사실상 여성노인이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는 것

에 제약을 주고 이로 인해 노후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 많은 여성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노후빈곤을 더욱 부추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성노후빈곤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방치된다면 여성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해볼때 이것은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연금소득에 있어서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 두 노인가구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노인가구의 소득원천을 파악하고 노인가구들간의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원천별 소득과 경제상태를 비교한다. 다음으로 특히 연금소득 수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증하여 연금소득 수급가능성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II. 문헌고찰

1. 여성노후빈곤의 해결책으로써의 국민연금의 중요성

여성은 소득구조와 취업구조에 불평등과 성차별이 누적되어 이것이 노후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빈곤을 맞이하는데 노후의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 역시 성차별적 관점으로 소득발생주의에 기초하여 남성을 기본 주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노인을 배제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안에서 여성은 가입부터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공적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은 여성의 노후빈곤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성별 격리현상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남성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여성은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성별격리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남성과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노후의 공적 소득보장정책에서까지 제외됨으로써 이것은 여성의 노후빈곤을 더욱 부추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2. 국민연금제도안에서의 여성

1)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2001년도 가입종별·성별가입자 현황을 보면 총 연금가입자는 16,116,420명으로 전체 연금가입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에 불과하다. 우선 2001년도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중에서 여성의 사업장 가입자 현황과 2001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이 외형상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에게 동등한 연금가입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업여성은 취업남성보다 연금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세이상인구인 남성전체인구에서 남성의 취업률은 71.5%이고 사업자가입자중의 남성이입비율이 71.2%인 것과 비교하여 15세이상의 여성인구중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48.5%인 반면 사업장가입자중 여성의 가입율이 28.7%이라는 것은 취업여성이 취업남성보다 실제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래 2001년 현재 1600여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전 국민 연금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여성의 임의가입자수는 26,326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여성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 -1> 가입종별·성별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비율	지 역 가입자	비율	임 의 가입자	비율	임의계속 가입자	비율
	인 원	비 율								
계	16,116,420	100%	5,860,431	100%	10,118,254	100%	30,468	100%	107,267	100%
남 자	11,188,926	69.4%	4,174,967	71.2%	6,949,474	68.7%	3,944	12.9%	60,541	56.4%
여 자	4,927,494	30.6%	1,685,464	28.8%	3,168,780	31.3%	26,524	87.1%	46,726	43.6%

출처: 국민관리공단. 가입종별·성별가입자 현황. 2001에서 재구성

2)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원인

우선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의 가입률은 낮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족주의 원칙을 근거하여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가족주의 원칙은 사별이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등으로 여성들의 결혼관계가 노후 끝까지 유지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일의 개념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임금노동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무임금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경제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임금, 사랑의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다(신낙규, 1997). 그러나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생활 공동 부담의 원칙이나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주부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국민연금의 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임금노동에의 여성의 참여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의무가 당연시됨으로써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 도중에 임금노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은 임신이나 자녀양육은 임금노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노년기의 소득보장에 위협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인 구조로 인해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서조차도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 평가하고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체계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임의가입자의 높은 보험요율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할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자가 가입에게 국민연금의 가입에 있어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으므로 여성의 국민연금의 가입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높은 연금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년 6월까지 3%인데 2000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 요율을 매년 1% 상향조정하여 2005년 6월까지 8%로 상향조종될 것이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요율을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3%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요율은 사업장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요율보다

높다. 이것은 전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취업상황이 남성과는 다르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5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사업장종사자중 23.5%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남성사업장종사자중 13.3%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 경제활동인구/고용관련통계,2001). 또 여성은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족노동자와 같은 노동자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6,206천명이고 여성은 1,566천명으로 전체 상용근용근로자중 25.2%에 불과하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 임시직근로자의 54.0%이며 전체 일용직근로자의 56.3%로 여성 경우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전체무급가족종사의 88.3%로 여성은 국민연금혜택이 주어지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다수가 취업하여 일을 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임금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진다(노동부,여성고용통계,2001). 또한 남성위주의 임금노동 참여를 표준형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금급여수준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노령연금의 수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는 적어도 20년이상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60세에 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남성들에게는 적합하나 비연속적이고 단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유급노동에 비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 유형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저하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M자형을 나타내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2000년 여성백서를 보면 남성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여성의 근로연수는 64.1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로연수가 평균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의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해 20년이상 가입해야 하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에 부여되는 가중치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

해 국민연금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속으로 편입되는 데는 것에 제약이 따름으로써 노후에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증적으로 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부부노인가구와 비교하여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원천은 무엇이며 연금소득액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위해 사용된 변수는 여성노인의 경제상태 및 연금소득액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월간 총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으로 이루어진 근로소득 I,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이루어진 이전소득등의 소득항목이 이용되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연금소득과 사회보장수혜가 포함되고 있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원칙이 여성을 국민연금제도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996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6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통계청에서 조사·실시하였으며 가구소득 분포 및 소비수준, 가구 내구재 보유현황과 저축, 부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계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자료이다. 또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노인만으로 이루어진 여성독신노인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노인이 가구주인 부부노인가구를 비교대상가구로 선정하였다. 여성독신노인가구의 비교대상으로 남성노인독인가구를 비교대상가구로 선정하려고 했지만 96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조사된 남성노인독인가구의 수가 너무 적어 비교대상가구를 남성노인이 가구주인 부부노인가구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 국민연금혜택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인 60세 기준으로 60세이상의 가구주 이루어진 여성독신노인가구 1,710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인 1,826가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성독신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세이상인 여성노인으로 혼자서 이루어진 가구이며 여성독신노인가구의 비교대상가구인 부부노인가구는 60세 이상의 남성이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로 구성되어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부 둘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하였다.

2) 분석방법

통계청에서 1996년도 실시, 조사한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구입하여 WINDOW용 SAS v. 8.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중에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주거형태, 주거점유형태등은 두 집단에 대해 각각 단순빈도와 백분율 산출하였으며 두집단간의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의 일종인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연령과 주택사용변면의 경우에는 평균과 T-test를 실시하여 집단간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각각 총월평균소득과 각각의 세부적인 소득항목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하였다. 또 세부적인 소득항목이 전체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비(%)를 산출했고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이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부부노인가구에 대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두 집단간의 유의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저축, 부채, 순자산에 있어서는 저축액과 부채액의 평균을 파악하고 저축액의 평균에서 부채액의 평균을 차감한 순저축액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국민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소득항목들에 대해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중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주거형태, 주거점유형태, 평균연령, 주택사용면

적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과반수이상의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가 비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60대, 70대 80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80세이상의 경우에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 11% 이고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3%정도로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으로 인하여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부노인가구보다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에는 70세이고 부부노인가구의 경우는 67세였다. 조사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독신노인가구는 직업의 상태가 무직인 경우가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더 많았으며 주거점유형태에서도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자가비율이 낮고 월세등의 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사용면적도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작았으며 연령이 있어서는 고령일수록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표 III-1> 조사가구의 일반적 특성(N=3,536)

(단위: 명,%)

변수명	유형	여성독신노인가구 (N=1710)		부부노인가구 (N=1826)		χ ²
		빈도	%	빈도	%	
지역	시부	598	34.97	800	43.81	28.87***
	군부	1112	65.03	1026	56.19	
연령	60-69세	788	46.08	1220	66.81	175.00***
	70-79세	732	42.81	536	29.35	
	80세이상	190	11.11	70	3.83	
학력	중졸이하	1614	94.38	1102	60.35	578.90***
	고졸	72	4.21	416	22.78	
	대졸	20	1.17	272	14.90	
	대학원이상	4	0.23	36	1.97	
직업	사무직	8	0.47	130	7.12	341.91***
	생산직	248	14.50	414	22.67	
	자영자	108	6.32	320	17.52	
	무직	1346	78.71	962	52.68	
주거 형태	단독주택	1530	89.47	1278	69.99	209.00***
	아파트	120	7.02	334	18.29	
	연립·다세대	36	2.11	156	8.54	
	기타	24	1.40	58	3.18	
주거 점유 형태	자가	1052	61.52	1494	81.82	181.77***
	전세	350	20.47	190	10.41	
	기타	308	18.01	142	7.78	
		Mean		Mean		t값
연령(년)		70.46		67.57		-13.53***
주택사용면적(평)		12.65		19.35		19.54***

원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p<.05 **p<.01 ***p<.001

IV. 분석결과

1.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및 국민연금소득액의 비교

총소득을 살펴보면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총소득평균은 399,206원이고 부부노인가구의 총소득평균은 879,851원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월총소득은 부부노인가구의 월총소득에 45.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세부적인 소득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에는 84,024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정도이며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490,229원으로 43%를 차지하였다.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여성독신노인가구보다 전체 소득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가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무직인 경우가 많다고 나온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산소득에 있어서는 여성독신노인가구는 107,662원이고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177,353원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재산소득은 부부노인가구의 재산소득에 6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을 대비한 노후소득원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누고 다시 공적이전소득은 연금소득과 사회보장수혜 두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소득을 산출하였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 10,034원이며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73,088원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연금소득은 부부노인가구의 연금소득에 13.7%인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연금소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액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원천들보다도 여성독신노인가구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소득액은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월총소득액중에서 1.5%밖에 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는 16,641원이고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9,142원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가 부부노인가구의 사회보장수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독신노인가구가 부부노인가구보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해 있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을 비교해보면 여성독신노인가구는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연금소득은 적고 사회보장수혜소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여성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수당에 의존하고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혜택을 받는 양분화 현상이 이미 진

행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될 경우 여성은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공적이전소득에 있어서의 성양분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 부부노인가구보다 국민연금소득액이 적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현행의 국민연금제도의 원칙들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됨으로써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에는

<표 IV -1>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수준비교

(단위: 원, N=3,536)

	여성독신노인가구 (N=1710)		부부노인가구 (N=1826)		여성노인가구 (%) 부부노인가구	t값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총소득(월) ¹	399206.04	100%	879,851	100%	45.37	16.41***
근로소득 I ²	84,024	18.77	490,228	43.49	17.14	15.57***
근로소득	50,967	11.86	260,260	27.79	19.58	15.77***
사업소득	28,429	5.27	223,787	14.36	12.70	8.17***
부업소득	4,627	1.64	6,180	1.33	74.87	1.65
재산소득	107,661	15.45	177,353	18.47	60.70	4.90***
이전소득 ³	207,520	65.78	212,269	38.05	97.76	0.53
공적이전소득 ⁴	26,675	11.70	82,230	8.74	32.44	8.52***
연금소득	10,034	1.50	73,088	6.62	13.73	9.98***
사회보장수혜	16,641	10.20	9,142	2.12	182.03	-4.57***
사적이전소득	180,844	54.08	130,038	29.31	139.07	-7.68***
총저축액	5,653,040	100	19,878,341	100	28.44	12.07***
총부채액	878,617	100	3,215,996	100	27.32	4.29***
순저축액 ⁵	4,774,423	-	16,662,345	-	28.65	9.95***

원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1. 총소득(월)=근로소득I + 사업소득 +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 근로소득 I =근로소득I + 사업소득 + 부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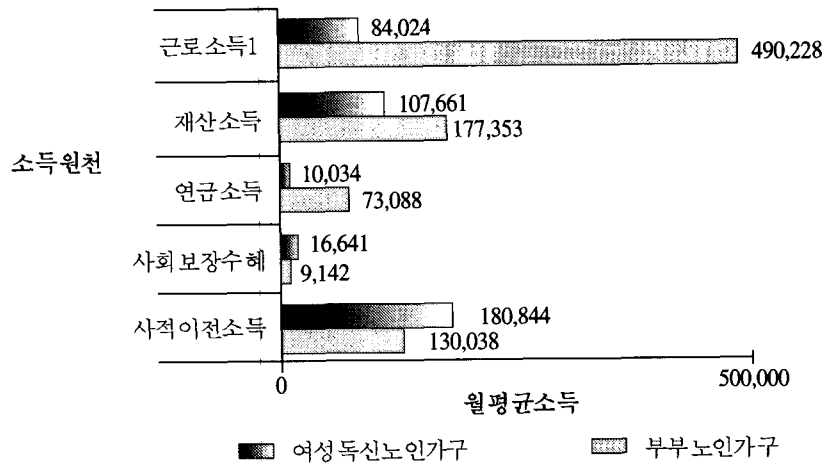
3.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4. 공적이전소득 =연금 + 사회보장수혜

5. 순저축액=총저축액 - 총부채액

*p<.05 **p<.01 ***p<.001

<그림 IV -1>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월평균비교



원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180,845원이고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30,039원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 월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4%나 되었다.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월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9.31%로 여성노인가구의 경우가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사회에서 사적이전소득에 노후소득원천의 반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 연금소득액의 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1)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 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가 어떠한 영향요인으로 인하여 소득원천중에서 연금소득액이 있는 가구도 있고 연금소득액이 없는 가구도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금소득액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구주성별, 주거점유형태등이 연금소득액의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초기단계이므로 연령이 많은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그만큼 적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여성노인의 경우 연금수급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영세한 사업장보다는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직업유무의 경우에는 직업이 있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성별의 경우 여자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서 여성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다는 것은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및 국민연금소득의 비교부분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공적부양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여성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남성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원칙들을 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게 국민연금혜택이 더욱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어야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주거점유형태가 자가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중에서는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중에서 연금소득유무에 영향을 주는 소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없으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도 재산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다는 것은 직업유무에서 직업이 있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득항목에 대한 logit분석 결과에서는 노후소득원천중에서 국민연금소득액을 대체할만한 소득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소득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금소득액에서의 성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를 감소

시킴을 위해 더 많은 여성을 국민연금제도로 편입시키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생애에 걸쳐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등으로 인해 노인부양에 있어서 사적부양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여성노후빈곤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여성에게 연금의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에 더 많이 편입될 수 될 수 있는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표 IV -2>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일반적인 특성		
연령		
70대	-0.8819****	0.3882
80대	-0.0400*	0.4003
지역		
도시지역	-0.2417	0.1612
교육		
고졸	1.7936****	0.2031
대졸	2.1834****	0.5310
대학원이상	2.6852****	0.5310
직업유무		
있음	-1.6144****	0.2603
가구주성별		
여자	-0.5620**	0.2014
주거점유형태		
자가	1.2869****	0.2627
소득		
근로소득 I	-5.85E-7**	2.033E-7
재산소득	-6.81E-7***	2.033E-7
사회보장수혜소득	1.555E-6	1.26E-6
사적이전소득	-3E-6***	5.376E-7
intercept	5.7827***	104.7407
percent concordant	82.3	

원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p<.05 **p<.01 ***p<.001

2)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두 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석한 결과 가구주 성별이 국민 연금유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특성 가운데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항목에서는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연금 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연금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액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적을 경우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공적이전소득이 많을 경우 자연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줄

<표 IV -3 >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일반적인 특성		
연령		
70대	0.2414	0.4332
80대	0.3119	0.5395
지역		
도시지역	-0.00787	0.4309
교육		
고졸	-8.2792	111.6
대졸	1.1309	0.9996
대학원이상	-12.0260	848.5
직업유무		
있음	1.7845	30.2324
주거점유형태		
자가	0.4201	0.4816
소득		
근로소득 I	-0.000366	0.000600
재산소득	-2.065E-6*	9.271E-7
사회보장수혜소득	-0.000065	3.7785
사적이전소득	-0.000013***	27.7857
intercept	1.0318	0.5940
percent concordant	89.0	

원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 p<.05 ** p<.01 *** p<.001

어떻게 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부양의 비중이 늘어나면 노인 스스로의 자가부양이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사적부양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점차 사회변화로 인한 사적부양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사회속 공적부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3) 부부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부부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표 IV -4> 부부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일반적인 특성		
연령		
70대	-1.2179 ^{***}	0.2255
80대	-15.2210	603.0
지역		
도시지역	-0.4229 [*]	0.1798
교육		
고졸	1.7175 ^{***}	0.2104
대졸	2.0817 ^{***}	0.2432
대학원이상	2.9140 ^{***}	0.5679
직업유무		
있음	-1.5716 ^{***}	0.2680
주거점유형태		
자가	1.4106 ^{***}	0.3488
소득		
근로소득 I	-6.402E-7 ^{***}	2.101E-7
재산소득	-5.784E-7 [*]	2.272E-7
사회보장수혜소득	2.75E-6	1.109E-6
사적이전소득	-2.278E-6 ^{***}	5.472E-7
intercept	1.7615 ^{***}	0.2471
percent concordant		84.8

원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p<.05 **p<.01 ***p<.001

연령, 지역, 교육, 직업유무, 주거점유형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70대의 경우 60대보다 연금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도 연령이 많을수록 연금소득액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에는 고학력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의 경우에는 직업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항목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여성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 두가구의 연금소득액 유무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노인가구는 은퇴등이나 건강악화등 노화로 인하여 재화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배우자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성노인에 비해서 더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일수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사적영역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공적부양은 여성노인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게 있어서 볼 때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양의 일종인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도만큼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선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생활보호자, 전업주부, 학생, 의무병역 군인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행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상 여성의 가입을 제약하게 된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안에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사

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여성연금권 확보 문제는 여성의 노후 빈곤을 야기시키는 근본기제인 가정내의 성역할과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부장적 전제들은 다루지 않은 채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안에서의 여성의 빈곤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예방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여성의 사회적 과정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결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여성노인은 평생동안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해왔지만 여성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임금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로 인하여 여성노인은 노후를 위한 소득원천이 남성노인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가족구조의 변화나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인은 자녀 의존적인 경향이 심하므로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을 여성노인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에서조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무시한 채 남성중심적이고 획일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여성노인은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혜택 안에서 소외되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은채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남성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여성은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성 격리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근거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여성노후빈곤에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이며 전업주부를 포함한 더 많은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실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원천과 연금소득액을 부부노인가구와 비교한 결과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이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독신가구의 빈곤상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국민연금소득액이 있어서도 여성노인가구의 연금소득액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액의 13.6%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목할 점은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수혜소득액이 연금소득액은 많은 반면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연금소

득액이 사회보장수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남성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여성은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성격리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과 소득항목등에 대해 국민연금소득액유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여성독신노인가구일수록 연금소득액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안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전업주부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에게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좀 더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일반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노후 최소생계보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성연금권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1인 1연금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인1연금체제라는 것은 가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는 자와 소득이 없는 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1층적 기초연금과 소득있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2층적 소득비례연금로 이원화하여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인1연금체제로의 이행은 전 국민의 노후 최소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고 취업여부, 취업형태 등에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후생활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여성의 노후빈곤은 심각하며 여성노후빈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획일적인 노인복지정책만을 시행하여 방치할 경우 결국 여성노후빈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안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노후빈곤의 해결책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신(1994). 노인부양의 문제와 대안 : 가족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년학회지. Vol 3 pp. 57-76
- 김문영(1997).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1990). 국민연금제도의 여성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 김오현(2001). 노인소득보장 활성화방안연구. 동국대학교
- 김진규(2001). 노인부양 복지정책에서의 가족 역할제고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김용하(1997).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남정립(199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노후빈곤.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 제20호
- 남정립(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제10권
제26호
- 노동부(2001). 고용동향분석
- 노동부(200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박정은(1990). 여성노인의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여성연구. 제8권 3호
- 박재홍(1990).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여성연구. 제8권
- 서병숙(1994). 노인연구(3판). 교문사
- 석재은,김태원(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8
- 성지미,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
회지. 제39권 2호
- 서종열(1996). 여성노인의 빈곤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 송미라(1993).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건희(1997). 우리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노년학회지. vol.17
- 신낙균(1997). 주부연금권 확보의 당위성과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신낙균(1997).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 신혜섭(1996). 21세기 여성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동덕여대동덕여성연구
- 여성특별위원회(1999). 1999 여성백서
- 여성특별위원회(2000). 2000 여성백서
- 이가옥(1989). 고령화추세와 실버산업의 전망. 경은조사
- 이옥순(200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부양실태 비교연구

- 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6집
- 이효원(197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영철(1999).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발전방향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선(1998). 노인부양책임에 대한 의식과 노인부양 행동.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춘식(199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포출판사
- 정영호(2000).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초희(2001). 여성노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정희수(1999).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조병은(1990). 한국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제3호
- 통계청(2000).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1999). 인구동태통계결과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 황선아(2000). 독거여성노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문희(1996). 한국여성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1호